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가정방문형 급여]

2024. 7.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심사실

1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부당사례1

A 수급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중 요양보호사가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해당 시간을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부당사례2

A 수급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중 요양보호사가 개인 용무를 보거나 마을회관 또는 B 수급자의 집에 방문하는 등의 사유로 A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일부 시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발
사유

급여내용 및 시간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RFID 포함)에 사실대로 작성(전송)한 후, 이를 근거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 2020.12.21.)
-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부당사례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이자 프로그램 관리자인 A가 일부 기간 동안 수급자들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이 아닌 방문목욕 시간에 프로그램 관리자로 방문상담 수행함.

해당 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발
사유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 2021.12.17.)
-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6항제4호 및 6호,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제14항

부당사례

○○노인복지센터 A 요양보호사는 일부 기간 동안 타 업종 회사의 대표자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필요시 토, 일 운영) 오전 11시 이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여 가족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어머니인 B수급자에게 방문요양 60분 이상(가족, 방문당) 수가를 월 20일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발
사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2.12.28.)
-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제3항

부당사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만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않거나 간호사인 시설장이 대신 수급자 자택 방문하여 상담 수행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수급자 전원 방문 상담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발
사유

고시 제57조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고시 제58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90%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 점수의 80%를 산정하여야 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2.12.28.)
-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부당사례

OO방문요양센터는 신고한 요양보호사가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시설장, 사회복지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직접 들고 다니거나 거주지가 아닌 특정장소에 두고 찍으면서 급여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발
사유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 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2.12.28.)
-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항

부당사례

○○복지용구 사업소는 사용 가능 헛수가 경과한 수동휠체어를 회수하지 않고 수급자가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사용 가능 헛수가 경과하지 않은 다른 제품을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발
사유

복지용구 사업소는 사용 가능 헛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헛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으로는 공고된 연장대여기간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관련
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2022.11.1.)
 -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제6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호, 2024.3.1.)